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용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24.

발의자 : 이용득 · 박정 · 송옥주

김종대 · 김영호 · 윤관석

한정애 · 전해철 · 고용진

심기준 · 박홍근 · 김정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·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·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4항).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4항 중 “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”을 “설치대상지역,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·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·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,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(생태통로의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<u>설치대상지역</u> 및 <u>설치기준</u>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45조(생태통로의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u>설치대상지역,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·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·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,</u>----- -----.</p>